

[별표 2] <개정 2023. 6. 30.>

직무수행태도 감점요소 및 감점점수

감 점 요 소		감점점수	비 고
근무태도 불 량	무단결근	1일에 0.1점	근무상황부에 따라 확인
	사적외출	누계 10회에 0.1점 (추가1회에 0.1점 가산)	"
	무단조퇴, 무단지각, 1근무시간 이상 무단이석	1회에 0.05점	본인 각서 징구, 근무상황부에 편철 처리
징계처분	정 직	1회에 2.0점	징계처분 결과에 따라 확인
	감 봉	1회에 1.5점	"
	견 책	1회에 1.0점	"
	불문경고	1회에 0.5점	"
직 위 해 제		1회에 0.5점	징계처분 시에 추가 감점 처리
업무처리에 대한 신분상조 치	외부 및 자체감사 등에서 경고처분	누계 2건에 0.2점 (추가 1건당 0.1점 가산)	경고 및 주의 처분대장에 따라 확인
	감사원감사 주의 처분	누계 2건에 0.2점 (추가 1건당 0.1점 가산)	"
	감사원감사 제외한 외부 및 자체감사등에서 주의 처분	누계 3건에 0.2점 (추가 1건당 0.1점 가산)	주의처분대장에 따라 확인

감 점 요 소		감점점수	비 고
대민불친 절 및 민원 야기행위	각종 언론매체 보도로 병무정책 신뢰 및 명예실추	누계 2건에 0.1점 (추가 1건당 0.1점 가산)	언론 보도사항으로 확인 (홍보담당이 인사관계자에 통보)
	업무상 착오 등 행위자 귀 책사유로 인한 진정·항 의서한 등 접수	누계 2건에 0.1점 (추가 1건당 0.1점 가산)	민원접수대장 및 발생경위 조사 확인 (고의·모함성 진정 제외)
	자체 점검에 적발	누계 3건에 0.1점 (추가 1건당 0.1점 가산)	자체 조치사항 참조 (훈계·시정조치 등)
사생활 문란행위	음주, 도박,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1회에 0.1점	사법기관의 통보, 진정서 접수 등 객관적인 관계 증빙서로 확인

- ※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 누계점수는 5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평정대상
기간 중의 감점요소에 한정하여 감점
- ※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추가 감점하며, 그 밖의 사유로 동일
사안에 따른 이중 감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점점수가 높은 것 1
회만 감점